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 부산광역시체육회 규약

제정	2016년 02월 29일
대한체육회 승인	2016년 03월 14일
전부개정	2017년 10월 10일
대한체육회 승인	2017년 10월 27일
개정	2018년 02월 21일
대한체육회 승인	2018년 03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39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부산광역시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부산광역시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 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체육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체육회’로 하며, 영문으로는 Busan Sports Council(약칭 BSC)로 한다.

제2조(목적)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부산광역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체육회관)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 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 및 구·군에 있는 체육회(이하 “구·군체육회”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시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지역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의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조직)** ① 시종목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③ 구·군체육회는((구)구·군체육회와 (구)구·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

립된 단체를 말한다)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대한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의 권리와 제10조제2항의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회비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회가 납부한 지회비를 대한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정회원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원은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권리를 제한받으며, 제2항제3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4. 회원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⑤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시종목단체는 중앙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④ 시종목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

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⑤ 중앙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다. <신설 2018.03.12>

제 3 장 총 회

제10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구·군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구·군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회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

반될 때

-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 임원(사무처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 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이사회

-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되,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체육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

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 체육회 등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

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구·군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여성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 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체육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 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 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⑧ 대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 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⑨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 50명 이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체육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

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사람

5.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대한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자문위원) 체육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장이 위촉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은 체육회 위원회를 준용한다.

제 6 장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인 시종목단체는 구·군종목단체와 등록팀,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②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중앙종목 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구·군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지회인 구·군체육회는 구·군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③ 구·군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을 준용한다.

④ 구·군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약에 따라 체육회가 별

도로 정한다.

- 제36조(구·군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구·군체육회의 임원(구청장·군수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구·군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 7 장 각종위원회

-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정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스포츠교류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 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규약·규정 관리
2.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

상 또는 징계

3.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체육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 ④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자료검토비 등)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의 회비 및 구·군체육회의 지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켜 기금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 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 단체의 임직원
2. 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및 구·군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회원 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③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가 체육회의 규약,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체육회는 관계기관(부산시, 구·군)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부산시, 구·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체육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⑦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관계기관(부산시, 구·군)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사무국

제49조(사무처) ① 체육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 직제 및 규정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부산광역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의 변경) ① 체육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

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체육회의 규약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③ 체육회는 규약,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④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처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은 체육회 규약에 우선하며, 체육회 규약을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체육회 규약과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체육회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 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시·도체육회 규정’, 체육회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6.03.1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인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약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임원(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 횟수에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단체와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약 시행 당시 (구)부산광역시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부산광역시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

다)의 임원에 대해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부산광역시경기단체와 (구)부산광역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부산광역시체육회 및 (구)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⑧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의 구·군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 중 어느 한 쪽이 없는 경우에는, 구·군에 있는 (구)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의 구·군체육회 또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회원인 구·군생활체육회를 구·군체육회로 본다.

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대의원은 (구)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의 대의원을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인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⑩ 이 규약에 의한 이사회 및 사무처 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직이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약 개정전 선임된 위원장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장선출) 제23조의 시장의 궐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할 수 있다.

부 칙(2018.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